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압수물건을 인계받는 대상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28조제5항 등).

II. 검토의견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전문위원 최 기 도)